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과학기술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남은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서론

연구자들은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다양한 저작물을 생산한다.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에는 연구분야의 성격상 표, 그래프, 수식, 지도, 도면 등의 기능적 저작물이 포함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고,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저작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두 번째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개성이 있는 수준의 창작성을 의미한다.

기능적 저작물은 소설·시·각본 등의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과 달리 기능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저작물이다 보니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에 대해서 독점권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능적 저작물들의 판례분석을 통하여 판례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1) 도면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 도 973 판결은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 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로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하였다.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보면 “이 사건 배치도면에 배치된 장비나 연결선 등의 모양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배치도면에서 폐쇄회로 카메라와 모니터,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을 단순한 사각형으로 도시하고, 장비들을 연결하는 배선을 직선의 실선, 일점쇄선, 점선 등으로 표시하는 것 및 그 장비에 표시한 단자의 모양은 기계설계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작도법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폐쇄회로 카메라와 모니터, 컴퓨터는 실물 모양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간략화된 실물 모양은 이 사건 배치도면을 작성한 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CAD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형화된 실물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서 그 선택에 도면 작성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표준화된 그림이므로, 이 사건 배치도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비나 연결선, 단자 등의 모양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도 973 판례는 기능적 저작물관련 최초의 판례로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다르게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2014. 12. 11. 선고 2012다 76829의 판례는 상표 도안관련 판례로 도안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된 판례로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원고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 도안은 모두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 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도안 : 

새로운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나 부품이나 구성품 등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은 개념도 수준의 도면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상세도면 등 다양한 형태의 도면을 만든다. 이러한 도면은 성격에 따라 포토샵, CAD 등 다양한 도구로 제작이 된다.

연구를 하면서 발생하는 도면의 경우는 예술성, 창작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을 설명하는 표현이 주를 이루다 보니 각종 장비의 배치 및 연결관계를 점, 선, 원형, 사각형 등 단순하게 표현하거나 도면 제작 도구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도 973 판례처럼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2) 지도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 50586 판결은 정밀지도를 발행하면서 도로지도와 관광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성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사용되는 지도는 실험이나 조사 결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지도를 사용한다. 간단하게 표시된 지도 위에 실선, 점선 또는 원형 등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 다 50586 판결에 비추어 보면 지도의 저작권 인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 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지도 위에 점선이나 실선, 화살표, 원형 등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3) 사진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 다 44542 판결은 고주파 수술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된 판례로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다.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저작권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민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 구입된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기도 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기도 한다.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서는 실험을 했던 환경을 사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사용하는 사진은 대부분 기술이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학문적 목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 다 44542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그래프의 저작물성

연구자들은 수치해석이나 시각화를 위하여 Matlab, Origin, ABAQUS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논문에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 도 973 판결에서는 도면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CAD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형화된 실물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것

으로서 그 선택에 도면 작성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표준화된 그림이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 도 973 판결을 비추어 볼 때 Matlab 이나 Origin 등을 통하여 수치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는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는 연구보고서나 논문을 출판하면서 도면이나 지도, 사진, 그래프 등으로 기술이나 사실, 기능을 표현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연구보고서나 논문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들을 판례를 근거로 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해 보았다.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판단 기준은 창작성이다. 저작권법에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성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면이나 지도, 사진 등의 저작물에서 기능이나, 기술, 실용적 목적을 설명하는 저작물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고, CAD 나 Matlab 등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아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기술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문이나 보고서로 발표하기 전에 특허로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